(붙임)

보험회사의 新제도 도입준비 현장점검 결과 안내

I 내부통제 체계 구축시 보완 필요사항

1 검증체계 구축

- □ 보험계리 및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 관련 **내부 검증절차** 및 **검증**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**내부통제기준**에 포함하여 운영
- □ 보험부채 평가시(K-ICS)에는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,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
- □ 시장성 없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시(K-ICS) **외부평가기관의 자산 평가결과**를 이용한다면, **평가방법**에 관한 **내부기준** 및 검증체계 등 **통제절차**를 구축하고 문서화
- □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여 보험부채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할 경우(K-ICS) 적정성 검증기준 등은 회사가 주체적으로 마련하고, 검증기준 및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

2 K-ICS 문서화

- □ K-ICS 문서화 사항은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, 이 중 **1단계 내부통제기준 마련**은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**법정기한내 완료**할 필요
 - 2단계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및 3단계 위험관리책임자 확인 사항도 K-ICS 최초 결산시점(업무보고서 제출일)까지 완료할 필요
 - **4단계 증빙 보관**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필요한 증빙을 **사후적** 으로 보관하여 관리할 필요

3 인력 충원

- □ 新제도 도입^{*}으로 계리 및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**필요한 인력을 충원**하고 **전문성 확보**
 - * 법규상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 조직 및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운영 등

Ⅱ 계리적 가정 등 수립시 보완 필요사항

1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

- □ (일반원칙)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시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 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 고려 필요
 - **손해율**(위험률)은 회사의 **경험통계**를 **기반**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, 경험통계 기간은 **합리적으**로 설정하고, 매기간 **일관**되게 적용
 -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목표손해율 사용여부는 회사가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목표손해율을 사용할 경우 수준 및 수렴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
- □ (미흡사례)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 수립시 목표손해율을 사용할 경우 주요 사례와 같은 가정 사용시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

--- < 주요 사례 > -

- 목표손해율 도달 시까지 손해율이 높은 계약들은 현재의 높은 손해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을 사용하지만, 손해율이 낮은 계약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현재의 낮은 손해율이 지속된다고 가정
- 최근의 손해율 수준 및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, 과거 경험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실적보다 낮은 손해율을 적용
-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낙관적 갱신가정을 적용하여 위험률차손익은 0으로 고정한 후 사업비차에서 잔여기간동안 마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등의 보험부채 추정방식 적용
-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이후에 의료급여 인상 등 보험금 상승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갱신보험료 조정시 과거 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도를 그대로 적용

2 K-ICS 가정

- □ (계약경계) 재가입형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K-ICS 기준 등을 참고 하여 재가입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판단할 수 있음
 - **재가입시 보험료** 또는 **보장급부**를 **완전히 조정·변경**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경계 구분 가능
- □ (사업비) K-ICS의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간접비도 고려 대상
 - 다만,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(투자계약 포함) 의무이행과 관련되지
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미반영
- □ (보험료 조정) K-ICS에서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률 최대한도는 법규상 보험료 조정 한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과거 경험조정률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
- □ (보험계약대출) 미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 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

Ⅲ K-ICS 비욜 산출시 보완 필요사항

1 자산·부채 평가

- □ (개인대출채권) 개인대출은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
- □ (금융부채) 후순위채권 등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,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

 다만,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"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 상태표"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
□ (재보험자산)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여 손실조정하고, 손실조정 시 재보험사의 해외 신평등급이 있는 경우 주어진 해외 신용평가기관 기준의 부도율 사용
□ (무형자산)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, 개발비, 소프트웨어 등 시장성 없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평가
□ (정기예금) 액면가액이 아닌 기준서에 제시된 공정가치 평가방법 (신용스프레드조정법)을 사용하여 평가
2 비율 산출
□ (지급여력금액) 순이연법인세자산 및 담보제공자산의 피담보채무 초과액은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
□ (보험위험액) 해지위험액 산출시 해지율만이 아닌 계약자 옵션행사 가정(해지율, 연금일시금전환율, 중도인출률) 모두에 충격을 부여
□ (금리위험액) 국채의 경우에도 채권별로 각각의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충격 후 가치 평가
□ (주식위험액) 시장성 이 있는 무형자산 (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·골프회원권 등)은 기타주식 으로 인식하여 충격 수준(49%)을 적용할 필요
 편입자산을 분해하지 않는 수익증권의 경우 약관상 레버리지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면 레버리지 펀드로 분류하고 레버리지 펀드에 해당하는 충격수준을 적용해야 함
□ (외환위험액) 외화 자산·부채의 공정가치 익스포져에 충격을 부여 하여야 하므로, 외환파생상품도 명목금액이 아닌 공정가치 포지션을 익스포져로 측정하여 충격을 부여할 필요

- □ (신용위험액) 보험미수금, 미수수익, 선급비용, 보증금 등의 비운용 자산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액을 측정
 - 출재에 따른 생명·장기손보위험액 경감액, 일반손보위험액 경감액, 및 금리위험액 경감액 등 재보험계약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액은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포함해야 함
 - 파생결합사채(DLB) **담보채권**의 **만기**가 익스포져보다 **짧아** 만기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**위험경감효과 적용 불가**
- ※ 법규 내용*을 참고하여 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[별표3] 제2호,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[별표22], [별표35] 등